

## 6 총회신학원 보고

제102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운영이사장 송귀옥  
서 기 김정호

### 1. 조 직

#### 1) 운영이사회

##### (1) 임 원

- 이사장 : 송귀옥
- 서 기 : 김정호
- 회 계 : 진용훈
- 부이사장 : 이기택
- 부 서 기 :
- 부 회 계 :

##### (2) 이 사(총 146명)

강 동 : 이강선	남 부산 동 : 이규현	서 경 : 임창일	전 북 : 서양원
강 원 : 채규형	남 서 울 : 최효식	서 광 주 : 김광혁	전 북 남 : 유태영
강 중 : 황남길	남 수 원 : 박춘근	서 대구 서 : 정명철	전 북 서 : 라상기
경 기 : 정명호	남 울 산 : 강진상	서 대 전 : 오정호	전 북 제 일 : 설안선
경 기 남 : 오인호	남 전 주 : 이강석	서 부 산 : 김영섭	전 서 : 김기철
경 기 남 1 : 김선웅	남 평 양 : 한근수	서 서 울 : 유선모	전 주 : 서정수
경 기 서 : 김성기	남 황 동 : 박경환	서 수 원 1 : 최윤영	전 주 : 김경태
경 기 중 양 : 원용택	대 경 : 김동식	서 수 원 2 : 이한우	제 경 기 : 전인식
경 남 : 이상근	대 구 : 임중구	서 울 : 장봉생	중 부 산 : 정두영
경 남 동 : 전의진	대 구 수 성 : 권성수	서 울 강 남 : 진용훈	중 서 울 : 김관선
경 동 : 최돈훈	대 구 중 : 박성순	서 울 강 서 : 김한성	중 서 전 주 : 김윤태
경 북 : 박종국	대 전 : 신종철	서 울 남 : 김희태	진 주 : 정계규
경 상 : 제석동	동 광 주 : 맹연환	서 울 동 : 방성일	충 남 : 윤익세
경 서 : 임영식	동 대 구 : 김형국	서 울 북 : 옥성석	충 북 동 : 이석원
경 성 : 장일권	동대전제일 : 하재호	서 울 한 동 : 김상기	충 북 칭 : 정진모
경 신 : 김흥천	동대전중양 : 원 철	서 인 천 주 : 임근석	충 평 남 : 김승규
경 안 : 박병석	동 서 울 : 김영규	서 전 주 : 배재균	평 서 : 권순웅
경 인 : 유재훈	동 수 원 : 민규식	서 평 양 : 장순직	평 안 : 최재열
경 일 : 성남용	동 안 주 : 김정호	서 평 남 : 현상민	평 양 : 김진하
경 중 : 남세환	동 인 천 : 이창환	소 래 : 김성근	평 양 제 일 : 최종천
경 청 : 이종형	동 전 주 : 반석창	수 경 : 최재호	평 중 : 설동욱
경 평 : 김희수	동 평 양 : 신규식	수 도 : 채이석	한 남 : 박명배
경 향 : 이강은	동 한 서 : 김중준	수 원 : 박경남	한 서 : 정병갑
고 흥 보 성 : 김용희	동 목 포 : 임성곤	수 천 : 이승수	한 성 : 전주남
관 서 : 이용효	목 포 서 : 송귀옥	시 화 산 : 김종택	함 경 : 최윤길



- ⑥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심의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와 재정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⑦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선거에서 부이사장-이기택 목사, 서기-김정호 목사, 회계-진용훈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 ⑧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운영이사회 직전 임원(이사장 강진상 목사, 부이사장 송귀옥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부회계 이기택 목사)과 영남-김동식 목사, 호남, 중부-신종철 목사, 서울, 서북-정병갑 목사로 선출하다.
- ⑨ 신규 임원 교체를 하다.  
이사장 송귀옥 목사 부이사장 이기택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회계 진용훈 목사  
재단측(부이사장, 부서기, 부회계)
- ⑩ 회의 안건토의  
가. 회계보고는 차후에 보고하기로 하다.  
나. 이사 오정호 목사가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공로패(총신정신수패)”를 제작하여 부상과 함께 표창하기로 동의하니 다수의 재정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다.  
다. 총신대학교 사태로 인해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야할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사 오정호 목사가 운영이사회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동의와 재정으로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 2)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 (1) 제1차 운영이사회

☞ 일 시 : 2017. 11. 15.(수) 오전 11:00

☞ 장 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실-학교에서 불허함으로 사당동 캠퍼스 에덴동산에서 회의하다.

#### ☞ 결의사항

- ① 회의순서를 임시로 채택하다.
- ② 전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다.
- ③ 운영이사 천귀철(경향) 이강은, 이상협(중서울)을 김관선으로 변경하다.
- ④ 총신 사태의 건-현상민, 이은철, 오정호, 진용훈, 김선웅 목사가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아래 사항을 결의하다.

가. 김영우 총장 명의로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도록 결의하다.

나. 공증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김영우 총장이 버틸 경우 김영우 총장 명의의 모든 문서(총회, 노회)를 수납할 수 없도록 결의하다.

다. 총신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과 재학생들의 김영우 총장 퇴진요구에 동참한 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를 현 상황대로 보장하는 결의를 하다.

라. 불법적으로 선출된 재단이사 15명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6장 제17조 2항에 의거 각 노회로 하여금 시벌하도록 결의하다.

####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6장 제17조 2항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재단이사나 운영이사는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로 하여금 제명케 하고, 불응시에는 총회재판국에서 치리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시까지 이사회회의 모든 공직은 유보한다. 불응하는 당회, 노회는 절차에 따라 제재한다.”



- 마. 노회로 하여금 언제까지 시벌하고(시무교회 사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다(단, 불이행 노회는 1차 모든 총회행정을 유보하고, 2차는 노회를 해체하는 건).
- 바. 총신사태 특별위원 7인 구성(운영이사 3인, 임원 2인, 외부 2인 중 장로 1인 포함)을 결의하다.

⑤ 제102회 총회 보고서 수정의 건

제101회 총회 보고서(1071P) 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제5조를 포함한 정관 전체를 별첨 자료 대로 제102회 총회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결의하다.

**별첨**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2:00

장소 : 익산 기쁨의교회

회의록 41p~60p까지 수록된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

⑥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다.

위원장 : 강진상 목사, 부위원장 : 송귀옥 목사, 서기 : 김정호 목사, 회계 : 이기택 목사

위 원 : 영남-김형국 목사, 호남,중부-오정호 목사, 서울,서북-이은철 목사

⑦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선출을 위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다.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

(2) 제2차 운영이사회

☞ 일 시 : 2017. 11. 27.(월) 11:00

☞ 장 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실-학교에서 불허함으로 사당동 캠퍼스 에덴동산에서 회의하다.

☞ 결의사항

① 서기 김정호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니 들어올 때 서명한 것으로 회원 호명을 대신하기로 결의하다. 서기가 총144명 중 출석 77명을 보고하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② 회순을 유인물대로 임시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③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회의 안건토의

가. 노회파송이사 변경의 건을 서기가 보고하니 받기로 결의하다.

1개 노회(함북)파송이사를 교체 변경하기로 하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정호 목사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9조 2항에 의거 추천위원(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대표)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고하다.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 15인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규칙에 따라 추천한 사실이 없으므로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후보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보고하다.

다. 교수 대표인 대학평의회 교원 대표 3인(김창훈, 주성희, 장성민)은 전체 교수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므로 추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라. 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김형국 목사(하양교회 시무)를 추천하는 공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왔음을 보고하다.

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형국 목사를 심의하고 그 결과

를 운영이사회에 보고하니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선출방법으로 제비 뽑기 방식과 직접 투표 방식을 준비 하였으나 기립투표를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김형국 목사가 선출되었음을 공포하고, 제7대 총장 김형국 목사가 당선수락 연설을 하다.

바. 기독교신문 광고 및 성명서 발표의 건

-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당선공고를 기독교신문 1면 하단에 하기로 하다.
- 재단이사 15명, 감사 1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다.

사. 소송비용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 시험문제 조사위원회를 임원회에 맡겨 5인으로 구성 하기로 결의하다.

### (3) 제3차 운영이사회

☞ 일 시 : 2018. 1. 4.(목) 오후 3시경(총회실행위원회 종료 후)

☞ 장 소 :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

☞ 결의사항

① 서기 김정호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니 들어올 때 서명한 것으로 회원 호명을 대신하기로 결의하다. 서기가 총144명 중 출석 77명을 보고하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② 회순을 유인물대로 임시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③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회의 안건토의

가. 총신대학교에 관한 건

나.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칼빈, 대신, 광신) 특별과정의 건

다. 재단이사의 건

위의 건은 제102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 (3) 제4차 운영이사회

☞ 일 시 : 2018. 5. 8.(화) 오후 6시

☞ 장 소 : 충현교회 1층 베다니홀

☞ 결의사항

① 서기 김정호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니 들어올 때 서명한 것으로 회원 호명을 대신하기로 결의하다. 서기가 총144명 중 출석 81명을 보고하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② 회순을 유인물대로 임시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③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회의 안건토의

가. 총신대학교에 관한 건은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진행상황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나.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을 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려고 상정하였으나 규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본회 규칙 제7장 제18조에 의거 규칙개정을 총회 개회전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다.

## 3)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

###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7. 9. 28.(목) 12:30

☞ 장 소 : 총회회관 5층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노회파송이사 선물의 건은 전체 운영이사(146명)에게 약 6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 소집의 건은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총회장 전 계현 목사와 면담 후 날짜를 결정하기로 결의하다.
- ※ 총회장께서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와 면담 후 의논하기로 한다고 하였고, 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는 전체 운영이사회 소집일을 10월 11일(수)로 잠정 결정했음을 총회장께 알렸다고 말씀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0. 26.(목) 15: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총회장,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 연석회의를 11월 3일(금) 오후 2시에 갖기로 결의하다.
-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회의를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에 소집하기로 하다.
- ③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건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3.(금) 11:3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현 총신대학교 사태의 건
  - 가. 총신대학교 총장은 약속대로 전임 총장의 잔여임기로 해야 한다.
  - 나. 현 재단(법인)이사들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다. 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공증한 대로(잔여임기) 시행하는 것을 재확인하다.
- ② 총회임원회와 총회 실행위원회 상정의 건
  - 가. 김영우 총장 명의로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다.
  - 나. 공증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김영우 총장이 버틸 경우 김영우 총장 명의의 모든 문서(총회, 노회)를 수납할 수 없다.
  - 다. 총신대학교 재학생들의 김영우 총장 퇴진요구의 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를 현 상황대로 보장한다.
  - 라. 불법적으로 선출된 재단이사 15명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각 노회로 하여금 시벌하도록 결의하다.
  - 마. 노회로 하여금 언제까지 시벌하고(시무교회 사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다. (단, 불이행 노회는 1차 모든 총회행정을 유보하고, 2차는 노회를 해체한다)
  - 바. 총신사태 특별위원 7인 구성(운영이사 3인, 임원 2인, 외부 2인)의 건

- ③ 제102회 총회 보고서 수정의 건  
제101회 총회 보고서(1071p) 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제5조를 포함한 정관 전체를 별첨 자료 대로 제102회 총회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결의하다.

**별첨**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낮 12:00

장소 : 익산 기쁨의교회

회의록 41p~60p까지 수록된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

- ④ 총신 운영이사회 보고의 건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실  
안건 : 총신 사태의 건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의 건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10.(금) 11: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총신 사태의 건은 운영이사 4~5명이 발언을 하기로 한다.
- ②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의 건  
가. 현장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자력으로 7명(운영이사회 임원 : 강진상, 송귀옥, 김정호, 이기택, 호남 중부 : 오정호, 서울 서북 : 이은철, 영남 : 김형국)을 선정하기로 하다.  
나.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전체회의는 11월 27일(월)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다.
- ③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전체회의를 위한 준비의 건  
총회장 회의비: 30만원, 기자광고비-10만원 8명, 도우미: 10만원 4명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 ④ 미주 동부 파송이사와 미주 서부 파송이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기총회 때에만 총회원수에 포함하기로 결의하다.
- ⑤ 총신대학교에서 회의장소 사용불가 통지 상황 대처의 건  
야외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의하다.  
가. 앰프 시설을 위해 방송장비 업체를 서기가 섭외하기로 하다.  
나. 파송이사 회의비 및 명찰 지급과 질서 유지를 위해 도우미를 유급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기자들에게도 광고비로 실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실비는 10만원과 증식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⑥ 회비 미납자(제99회, 100회기, 101회기) 독촉공문 발송의 건  
가. 파송이사 개인과 노회 서기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나. 회비납부 확인 자료를 보내오는 이사들 중에 학교법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영수자료를 접수만 해놓기로 하다.  
다. 제100회 총회 제2차 실행위원회(2016년 2월 18일) 결의 이후 학교법인으로 이사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 일 시 : 2017. 11. 15.(수) 10:00
- ☞ 장 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학생식당
-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종합관 세미나실을 폐쇄함으로 야외에서 운영이사회를 진행할 준비상황을 점검을 서기 김정호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5) 제6차 임원회

- ☞ 일 시 : 2017. 12. 14.(목) 15:00
- ☞ 장 소 : 총회회관
- ☞ 결의사항

- ① 총신관련 서류 이첩 및 운영이사회 방침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 및 청원사항의 건  
총회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되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 허락의 건  
나.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총 499명 중 약 300명이 “목회준비세미나(2017년 12월 5일(화)~8일(금)까지)”에 참석하여 이수한 상황에서 후속처리를 이수하게 하는 건  
(1) 1주간 강의료 및 숙박비는 운영이사회비 장학금에서 지원  
다. 총회신학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 3주간 총회 교육의 건  
※ 강의장소- 칼빈대학교(약160명)에서 강의 및 숙박(1인당 100만원-자부담)  
라. 위 (1),(2),(3)건에 대해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목회준비세미나, 총회신학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 교육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일임하여 진행하고,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하여 강도사고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② 제102회 제1차 실행위원회 결의 조속 시행의 건  
가. 재단이사 15인 및 감사 제재의 건을 현의하기로 하다.
- ③ 빛고을노회 총회 제99회기 파송이사회비 처리의 건  
파송이사 김종주 목사가 봄노회 결의로 변찬 목사로 선정했다고 하는 자료를 FAX로 보내기로 했기에 서기가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7) 제7차 임원회

- ☞ 일 시 : 2017. 12. 29.(금) 13:30
-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의 건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 허락의 건-인정할 수 없다. 단, 총회(운영이사회)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3학년 1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1주간 실시하는 목회준비세미나<2018년 2월 5일(월)~9일(금)>는 학비는 없고, 원서접수는 1



월 15일(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총회회관 1층에서 접수-서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 ②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의 건  
총회신학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 3주간 총회 교육의 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하다.
- ※ 강의장소- 칼빈대학교(약160명)에서 강의 및 숙박(1인당 100만원-자부담)  
접수비 및 면접비 무료,  
접수일정 - 2018년 1월 15일(월)~1월 19일(금) 오후5시까지  
구비사항 - 각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수업일정 - 2018년 1월 22일(월)~2월 9일(금)  
기 숙 사-서울 경기 지역은 제외
- ③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 운영 요청의 건  
총회 공문(본부 제102-304호)에 의하면, 2017년 12월 5일자 기독교신문에 보고된 특별위원을 발표하였지만, 해당 위원회가 총회신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조직하여 운영해달라는 건은 제102회 총회 때 조직 보고하여 허락받은 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 ④ 총신사태 정상화 후원의 건  
2000만원을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후원하는 것은 시행하기로 결의하다.
- 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통장 개설의 건  
총회로 공문을 발송하여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 학비를 수납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다.

##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4.(목) 10:20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의 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 허락의 건을 총회(운영이사회)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과정(목회준비세미나)을 수료한 학생은 3학년 1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요청의 건  
1주간 실시하는 목회준비세미나(2018년 2월 5일(월)~9일(금))는 학비는 없고, 원서접수는 1월 15일(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총회회관 1층에서 접수-서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 ②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의 건  
총회신학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 3주간 총회 교육의 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건.
- ※ 강의장소- 칼빈대학교(약160명)에서 강의 및 숙박(1인당 100만원-자부담)  
접수비 및 면접비 무료,  
접수일정 - 2018년 1월 15일(월)~1월 19일(금) 오후5시까지  
구비사항 - 각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수업일정 - 2018년 1월 22일(월)~2월 9일(금)

③ 각 노회 이행의 건

가. 각 노회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졸업 사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신학원 특별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학생들은 노회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소속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졸업 인준을 거부해야 하며, 해당학생들의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신대원 재학생 노회 지도의 건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추천서 “서약서(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서약서 양식은 추후 발송 예정)

다. 위 ①, ②항을 위반할 시 해 노회에 대한 징계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한다.

④ 총장 선정 규칙 개정의 건

규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 7인 중 당연직 임원 4인(강진상, 송귀옥, 김정호, 이기택) 서울, 서북: 성남용, 영남: 임종구, 호남, 중부: 김성기

특별교육 위원 7인 중 당연직 4명(강진상, 송귀옥, 김정호, 이기택) 서울, 서북: 진용훈, 영남: 김정훈, 호남, 중부: 김성원

⑤ 총회 인준 신대원 청원서의 건

총회 인준 3개 신학대학원 졸업 예정자 대표들이 총회장과 총회 임원 앞으로 발송한 청원서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10.(수) 11:00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① 총회준신대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교육 준비의 건

일 시 : 2018년 1월 23일(화)~25일(목)

1월 30일(화)~2월 1일(목)

2월 5일(월)~7일(수)

교육장소 : 라비돌리조트

원서접수 : 2018년 1월 15일(월)~19일(금) 오후 3시

원서접수처 : 총회회관 4층 재무과

수업료 1인당 100만원(접수비 및 면접비 무료)

구비사항 - 각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② 목회준비세미나의 건

일 시 : 2018년 2월 5일(월) ~ 7일(수)

교육장소 : 신텍스(수원과학대학교, 라비돌리조트)

숙소준비 : 라비돌리조트

숙소에서 학교로의 이동계획은 병점역에서 대형버스 10대

원서접수일정 및 접수처, 접수기간은 상동

구비사항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③ 총장 선정 규칙 개정위원회 및 특별교육위원회의 건  
금일 두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④ 제102회 제2차 총회 실행위원회에 통과된 서약서의 건  
각 노회로 보낼 서약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총회임원회와 의논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 ⑤ 노회목사후보생 추천서 양식이 없다고 문의하는 건  
각 노회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전자우편으로 보낼 주체는 누구인가?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표준양식을 보내기로 하다.
- ⑥ 강도사 고시를 응시하지 않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들의 졸업에 관한 건  
여학생들도 목회준비세미나에 참석하도록 결의하다.
- ⑦ 교육장소로 선정한 라비돌리조트에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실사 후 계약하기로 결의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22.(월) 오후 6시

☞ 장 소 : 라비돌리조트

☞ 결의사항

- ① 총회준신대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교육 준비의 건

일 시 : 2018년 1월 23일(화)~25일(목)

1월 30일(화)~2월 1일(목)

2월 5일(월)~7일(수)

교육장소 : 라비돌리조트

숙박시설과 교육장소를 실사하고 점검한 것을 서기 김정호 목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목회준비세미나의 건

일 시 : 2018년 2월 5일(월) ~ 7일(수)

교육장소 : 신텍스(수원과학대학교, 라비돌리조트)

숙소준비 : 라비돌리조트

수업장소로의 이동계획은 병점역에서 대형버스 10대

2월 5일 - 오전 10시 대형버스 5대, 오전 10시 30분 5대 배차

2월 7일 - 오후 2시 30분에 대형버스 10대 배차

숙박시설과 학생 수송계획을 서기 김정호 목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특별세미나 강사료 및 순서자 사례 지급의 건

강사료 : 90분 강의 2회-50만원, 90분 강의 1회-40만원

예배순서자 사례

설교자 - 50만원, 격려자 - 30만원

사회, 기도, 광고, 축도 등 모든 순서자 - 20만원

- ④ 기자들과 도우미로 협력할 분들에 대한 실비 지급의 건

총회 인준 신대원 특별세미나를 위해 도우미와 기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29.(월) 오후 6시



☞ 장 소 : 라비돌리조트

☞ 결의사항

- ① 총회 인준 신대원(칼신,대신,광신) 특별교육 장학금 지급의 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체학생들(1438명)에게 장학금 215,700,000원을 지급한 것 같이 총회 인준 신대원 특별세미나 참석한 학생들(116명)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총액 1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 ② 목회준비세미나의 건  
일 시 : 2018년 2월 5일(월) ~ 7일(수)  
교육장소 : 신택스(수원과학대학교, 라비돌리조트)  
숙소준비 : 라비돌리조트  
수업장소로의 이동계획은 병점역에서 대형버스 10대  
2월 5일 - 오전 10시 대형버스 5대, 오전 10시 30분 5대 배차  
2월 7일 - 오후 2시 30분에 대형버스 10대 배차  
숙박시설과 학생 수송계획과 개강예배 및 강의일정을 서기 김정호 목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목회준비세미나 강사료 및 순서자 사례 지급의 건  
강사료 : 90분 강의- 40만원, 증경총회장은 50만원  
예배순서자 사례  
설교자 - 50만원, 격려자 - 30만원  
사회, 기도, 광고, 축도 등 모든 순서자 - 20만원
- ④ 기자들과 도우미로 협력할 분들에 대한 실비 지급의 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준비세미나를 위해 도우미와 기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2. 7.(수) 오전 9시

☞ 장 소 : 라비돌리조트

☞ 결의사항

- ① 총회 인준 신대원(칼신,대신,광신) 특별교육 서류 검토 의 건  
총회 인준 신대원 특별세미나에 원서를 접수한 116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전체 학생들의 성적과 특별세미나 출결사항을 유급으로 입력하여 다음 회의 때 수료를 위한 심의를 하기로 결의하다.
- ②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준비세미나 서류 검토의 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준비세미나에 원서를 접수한 447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전체 학생들의 성적과 성경고사 통과여부와 목회준비세미나 출결사항을 유급으로 입력하여 다음 회의때 수료를 위한 심의를 하기로 결의하다.
- ③ 수료증의 건  
종강예배 때 예정된 수료증 수여는 목회준비세미나 1명(첫번째 등록자),총회 인준 신대원 특별세미나 각 대학원 원우회장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위 심사 후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특별과정위원회의 결의로 수여하기로 결의하다.
- ④ 목회준비세미나 야간과정의 건

2월 26일(월)~28(수)까지 총회회관에서 시행하기로 하다.

⑤ 강사료 및 순서자 사례의 건

2월 5일(월)~7일(수)까지 진행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2. 20.(화)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목회준비세미나 및 총회 인준 신대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세미나 예산 결산의 건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준비세미나(야간) 예산의 건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③ 목회준비세미나 야간과정의 건  
유인물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④ 기타의 건

가. 기독교신문 광고를 하기로 하다.

이사회비 2016년과 2017년 완납여부 기재(미납이사는 4월말까지 납부토록 한다, 계좌번호, 문의사항),

장학금 지급-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438명(215,700,000원),

장학금 지급-총회인준 신대원(칼, 대, 광) 116명(11,600,000원),

나. 목사후보생 서약서를 4월말까지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하다. 총회 임원회로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14) 제1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2. 26.(월) 오후 2시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목회준비세미나 야간과정 준비상황의 건  
서기 김정호 목사가 준비상황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수료증 발송의 건  
특별교육위원회의 결의 후 시행하기로 하다.
- ③ 장학금의 건  
총신대학교교수협의회(의장 김성태 교수)에서 청원한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의 건은 허락하기로 결의하다.

(15) 제1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3. 12.(월) 오후 1시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총신비상사태에 대한 각노회 결의문의 건  
유인물대로 각 노회 시달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 ②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규칙개정의 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③ 차기 임원회의의 건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에 임원회를 소집하다.

(16) 제1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3. 16.(금)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운영이사회 전체회의 소집 일자 변경의 건  
2018년 5월 9일(수)에서 2018년 5월 8일(화) 저녁시간  
식사제공, 여비 지급, 명찰 준비
- ② 신학대학교 정관 확인 및 조사의 건  
장신대(통합), 고신대, 감신대, 침신대, 한세대(순복음), 서울장신대(통합), 서울신대(성결교), 협성대(감리교), 한신대(기장) 서기 김정호 목사가 비교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차기 임원회 및 규칙개정특별위원회 소집의 건  
2018년 4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오전 11시에 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1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4.(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결의사항

- ① 9개 신학대학교 정관 비교 검토자료 보고의 건  
오전 11시에 소집된 규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②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 소집 청원의 건  
수정하여 받고, 총회에 청원서를 접수하기로 하다.
- ③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 검토의 건  
오전 11시 소집된 규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성명서의 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기독교신문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의하다.
- ⑤ 기독교신문 광고 및 인터넷 신문 광고의 건  
성명서 및 전체회의 소집 광고, 규칙개정 공청회 개최의 건을 7.5단 광고를 하고, 인터넷신문 한 곳에 하기로 하다.
- ⑥ 크리스천포커스 송삼용 대표기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의하다. 소송비용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회의(2017. 11. 27.) 사용하기로 결의한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8) 제1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12.(목) 오전 10시

☞ 장 소 : 총회회관 1층 1호

☞ 결의사항

- ① 총장 선출 및 재단이사 선출 규칙 및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② 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준비의 건  
4월 20일(금)에 최종 점검을 하기로 결의하다.
- ③ 5월 8일 운영이사회 준비의 건  
· 여비는 모두 100,000원으로 통일하고,  
· 저녁식사비를 1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 도움 1명과 기자 6명으로 결의 하다.
- ④ 운영이사회비 이체 내용증명의 건  
·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 이사회비 관련 건과 총신대 법인국으로 납부된 이사회비 명단과 납부된 이사회비 계좌이체의 건은 100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2016. 2. 18.) 결의 이후의 이사회비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총신대학교 법인국으로 발송하기로 결의하다.

(19) 제19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20.(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총회회관 1층 1호

☞ 결의사항

- ① 총장 선출 및 재단이사 선출 규칙 및 정관 개정(안) 검토 의 건  
수정보완하기로 결의하다.
- ② 규칙개정안 규칙부로 보내는 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 ③ 총회개혁연대 발기인 88명 및 “크포” 기사에 관한 건  
크리스천포커스에 계속 올라오는 기사들을 첨부하여 상담 중인 변호사에게 보내기로 하다.
- ④ 총장선출규정 개정을 공청회 준비의 건  
2018년 4월 27일 오전 11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다. 도시락은 중식비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20) 제20차 임원회

☞ 일 시 : 2018. 5. 9.(수)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총현교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보류자에 대한 건  
총회에서 수신한 서류를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의하다.
-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회의 후속조치의 건  
차기 전체회의 : 2018년 8월 14일(화) 정기회로 모이기로 하다.  
임원회 - 2018년 5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규칙개정특별위원회 - 2018년 5월 24일(목) 오전 11시
- ③ 장학금 지급의 건  
총신대학교 사태로 인해 미지급한 장학금은 재차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신학과 3학년-3,000만원, 신대원-2,000만원



- ④ 이사회비 미납자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하다.
  - 2년동안 이사회비를 미납한 해 노회는 별명부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의하다. 단, 정기 총회 회의책자 인쇄 전까지(2018년 8월 10일) 미납회비를 완납할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회복하기로 하다.
  - 2016년 2월 18일 제100회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제101회 총회 결의(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124p) 4항에 의거 총신대학교 통장으로 이사회비를 납부한 노회는 총회결의를 위반하였기에 이사회비를 미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하다.  
'이어 동 이사회가 청원한 ① 총신운영이사의 이사회비 조정, ② 노회가 총신 운영이사 이사회비를 이사회 통장으로의 직접 입금 처리, ③ 총신운영이사회비의 총신대 법인국이 아닌 이사회 통장으로 입금 처리, ④ 총신대학 법인국(운영이사) 재정지출 금지, ⑤ 노회 파송이사의 2회 이상 이유없이 회의 불참 시 이사회교체를 노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1) 제21차 임원회

- ☞ 일 시 : 2018. 5. 24.(목)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총회회관
-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수정의 건  
차기 회의 시 이사장이 수정안 원안과 총장추천위원회가 삽입된 규칙(안)을 준비하여 심의하기로 결의하다.
  - ②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운영이사회 관련) 반론의 건  
기독교신문, 리폼드뉴스, 합동교회언론회, 크로스뉴스에 반론 기사를 신기로 하고, 이사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③ 규칙 개정을 위한 차기 회의는 2018년 6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22) 제22차 임원회

- ☞ 일 시 : 2018. 5. 29.(화) 오전 11시
- ☞ 장 소 : 총회회관 603호
-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수정의 건  
6월 1일 규칙개정위원회 회의시 이사장이 수정한 원안과 규칙개정위원회가 심의했던 수정안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다. 총장추천위원회를 13인으로 확대하여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하다.
  - ②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운영이사회 관련) 반론의 건  
5월 28일 발간된 장로신문(제387호) 7면에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었고, 인터넷 신문 리폼드뉴스와 합동교회언론회, 합동헤럴드에 보도자료가 기사화되었음을 서기가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23) 제23차 임원회

- ☞ 일 시 : 2018. 6. 1.(금) 오후 1시 30분
- ☞ 장 소 : 총회회관
-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수정의 건



이사장이 수정한 원안과 규칙개정위원회가 심의했던 수정안을 심의하여 하나의 수정안을 만들기로 결의하다.

- ②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운영이사회 관련) 반론의 건  
크리스천포커스 대표기자 송삼용 목사의 기사 내용을 항상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다.
- ③ 차기 회의  
2018년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소집하기로 하다.

#### (24) 제2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22.(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수정의 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계속 심의하기로 하다.
- ② 크리스천포커스 기사(운영이사회 관련) 반론의 건  
지속적으로 총회와 운영이사회를 폄하하는 기사들을 예의주시하여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6월 25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모이기로 하다. 목회준비세미나 및 특별세미나 수료증 배부하기로 하다.

#### (25) 제2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25.(월) 오후 3시 20분

☞ 장 소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법인이사 교육부 청문회 준비의 건
  - 6월 29일 교육부 청문회 준비 및 총신대학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기로 결의하다.
  - 자문변호사는 교육부가 자문을 요청했던 고문 변호사로 결정하고, 전체이사회 결의대로 자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다.
  -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된 사안들은 총회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자문 내용을 보고받기로 하다.
- ② 차기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규칙개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 2시에는 임원회가 모이기로 결의하다.

#### (26) 제2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28.(목) 오후 2시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의 건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한 것을 서기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교육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의 건



흥미정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하고, 매월 약 1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 수련회의 건  
2018년 7월 23일(월)~25일(수)까지 제주도에서 갖기로 하고, 소요경비는 운영이사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하다.

### (27) 제2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7. 16.(월) 오전 10시 20분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총회신학원 입학 허가 및 운영문제의 건  
제103회 총회에 청원사항으로 올려서 총회 결의대로 따르기로 결의하고,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협의회 앞으로 답신을 보내기로 결의하다.
-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에 입학이 보류된 학생들에 관한 건  
제102회 총회 결의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 결의로 보내온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이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총회 임원회에 제103회 총회에서 다루어주시도록(강도사고시 포함) 회신하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 수련회의 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 수련회는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부산에서 7월 23일(월)~25일(수)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경비는 운영이사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하다.
- ④ 제103회 총회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보고서 및 청원서 작성의 건  
보고서 삽입내용은 ㉠ 규칙개정위원회 보고, ㉡ 특별교육 과정 보고, ㉢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보고를 삽입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 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정기총회의 건  
2018년 8월 14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선거 및 규칙개정을 시행하기로 하다.
- ⑥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건  
총회 산하 기관들(기독신문, GMS)의 규칙이나 정관들을 확인해보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을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법적 자문을 받기로 결의하다.
- ⑦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정기총회 공문 발송의 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정기총회 공문은 규칙에 따라 등기로 모든 운영이사에게 발송하되, 제10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총회 규칙부장, 총회장, 총신대학교 법인국(총장),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에게도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 (28) 제2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7. 24.(화) 오후 1시

☞ 장 소 : 부산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건  
수업거부로 인한 학점 취득 수업료가 3학점 미만은 50만원, 6학점 미만은 100만원, 9학점 미만은 150만원, 9학점 이상은 300만원이고, 수업거부자가 총 194명인데, 그 중에서 강도사 고시 합격 보류자 총 114명 중에서 성경고사 미필 1명을 제외하고, 수업거부자(113명) 중에서

장학금 지급은 - ALL학점 61명은 1인당 60만원, 7~8학점 12명은 1인당 40만원, 4~6학점 6명은 1인당 30만원, 1~3학점 34명은 1인당 20만원으로 결정하다.

-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정기총회의 건  
정기총회(일시 8월 14일) 시 총회 결의와 규칙대로 이사회비 미납과 2회이상 결석을 파악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다. 이사회비는 2018년 8월 13일(월) 오후4시까지 완납이 확인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하도록 결의하다.
- ③ 총회실행위원회 및 총회 규칙부 모임 요청의 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및 선거규정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① 총신대학교 상황보고의 건, ②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및 선거규정 승인의 건을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다.
- ④ 기독교신문 광고의 건  
기독교신문에 7.5단으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정기총회 소집광고 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결의와 규칙대로 이사회비 미납과 2회이상 결석된 회원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할 것을 공고하기로 결의하다. 장소는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 ⑤ 총회 역사관 총회산하기관에 운영이사회 삽입의 건  
총회회관 1층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관 총회산하기관 코너에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빠져 있기에 삽입할 내용과 사진을 총회역사위원회에 보내서 시행하도록 결의하다.
- ⑥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 차기 회의의 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자 선정을 위한 임원회의를 2018년 7월 27일(금)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소집하다.

## (28) 제2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7. 27.(금)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관

###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건  
강도사고시 합격 보류자 총 114명 중에서 성경고시 미필 1명을 제외하고, 수업거부자(113명) 중에서 장학금 지급은 - ALL 학점 61명은 1인당 60만원, 7~8학점 12명은 1인당 40만원, 4~6학점 6명은 1인당 30만원, 1~3학점 34명은 1인당 20만원으로 결정하다.
- ② 제103회 총회 보고의 건  
특별교육과정 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 총회목회대학원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보고 및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 차기 회의의 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자 선정을 위한 임원회의를 2018년 8월 7일(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소집하다.

## (29) 제29차 임원회

☞ 일 시 : 2018. 8. 7.(화)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남평양노회, 평중노회 이사회비 조정의 건
  - 남평양노회는 동평양노회에서 3분립(동평양, 평양, 남평양)된 노회로서 현재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는 건은 103회기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하다.
  - 평중노회는 여러 번 노회가 분립되었기에 현재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하다.
- ② 전체이사회(8월 14일) 회의장소 준비에 관한 건
  - 목포에서 1박2일로 예정된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③ 8월 9일(목)~10일(금) 운영이사회 임원회의 건
  - 목포영락교회(송귀옥 목사 시무)가 세부 일정을 준비하기로 결의하다.

### (30) 제30차 임원회

☞ 일 시 : 2018. 8. 9.(목) ~ 10일.(금)

☞ 장 소 : 목포영락교회

☞ 결의사항

- ① 전체이사회(8월 14일) 회의장소 준비의 건
  - 종합관 2층 세미나실
  - 종합관 1층 로비
  - 야외 잔디밭(일명, 에덴동산)
  -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앰프, 텐트 그늘막을 준비하는 건
- ② 전체이사회(8월 14일) 운영이사 교통비 지급에 관한 건
  - 이사회비 미납한 운영이사들은 교통비를 미지급하는 건
- ③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 후속 조치의 건
  - 2017년 9월 12일에 지급한 장학금 미수령 학생들의 장학금은 본회 회계에 접수입으로 입금하기로 결의하다.

### (31) 제3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8. 13.(월)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정기총회(8월 14일) 의사정족수에 관한 건
  - 2회 결석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다.
- ② 정기총회 회의 책자의 건
  - 서기 김정호 목사가 준비하여 보고한대로 제작하기로 결의하다.
- ③ 차기 회의는 정기총회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갖기로 하다.

## 3. 특별교육위원회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목사후보생들의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102회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에 의거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기에 제2회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2018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 총회신학원(총신대학

교) 운영이사회가 특별세미나를 시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특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학년도 총회인준 신학대학원 특별세미나는 3개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116명이 등록하여 2018년 1월 23일(화) 경기도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2018년 2월 7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은 목회준비세미나는 446명(남 389명, 여 42명 야간 남12명, 여 3명)이 등록하여 2018년 2월 5일~7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야간과정을 위해 2018년 2월 26일(월)~28일(수)까지 총회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특별세미나를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직접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졸업 허락의 건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결의한 것이다.

#### 4. 규칙개정위원회 보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으로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인 정관상 이사회결의 후 10일 이내에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정관 제30조의2). 그렇다면 2017년 9월 15일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법인 정관을 변경 결의를 했다면 적어도 2017년 9월 25일까지는 공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에야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의록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단이사회가 1개월이나 늦게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법인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회의록에 무엇을 변경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공개된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 정관 변경의 건-법인정관 변경에 관한 토론한 결과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자가 찬성을 물으니 12명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명이 거수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찬성의사가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여 사회자가 유인물대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법인정관에 대한 변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유인물대로 정관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유인물이나 변경결의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관변경은 회의록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규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12회에 걸친 심의를 통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안을 2018년 8월 14일에 소집된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총회 결의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8장 제18조, 제19조에 의거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제103회 총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 총회에 보고했다.

#### 5.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보고

##### ① 경과보고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로 총회목회대학원의 운영권을 소유하고, 제 102회 총회에서 동 임무가 연장되었으므로 총회목회대학원에 대하여 총회로 그 운영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공적인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총회 공문(본부 제102-304호)에 의하면, 2017년 12월 5일자 기독교신문에 보고된 특별위원을 발표하였지만, 해당 위원회가 총회신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조직하여 운영해달라는 건에 대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회는 제102회 총회 때 조직 보고하여 허락받은 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함으로 제



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대로(총회 보고서 1005p) 위원장-김희태 목사, 서기-김정호 목사, 회계-윤익세 목사, 위원-최윤길 목사, 박영수 장로로 결정하다.

제101회 총회 결의대로 직전총회장이 총회목회대학원 원장(단회적/1년)으로 명시되었으나 제85회 총회 결의(①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현의한 70세 정년되는 해에 임원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 ②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현의한 본 교단 기관 목사도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되느냐의 건은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결한다.)에 의해 본 위원회는 3차(1차: 2017년 11월 20일, 2차: 2018년 1월 17일, 3차: 2018년 4월 19일)에 걸쳐 검토한 결과,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정년문제로 제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임하지 못했기에 동일하게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회 규칙도 없는 소위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라는 사담(私談)을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총회목회대학원 운영과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제102회 총회에서 수임한 회계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자들을 소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을 수임한 동 위원회는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동위원회 서기(총회목회대학원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에게 행정 및 재정 집행,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허락하고 “선집행 후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

## ② 최종 결론 및 청원안

1977년 제61회 총회는 교단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총회목회대학원을 설치하는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목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회목회대학원은 그 교육을 위탁하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위탁하여 직영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직전총회장(단회적/1년)으로 제101회 총회에서 허락받았으나, 금번과 같이 정년문제로 흥역을 치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동 위원회는 총회목회대학원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소관이기에 운영이사장이 원장을 맡아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 1)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이 맡는다.
- 2) 총회목회대학원 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여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3) 총회목회대학원 이사는 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 총신대학교 총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 지역 김한성 목사, 서북지역 최윤길 목사, 호남 지역 김종주 목사, 중부 지역 윤익세 목사, 영남- 박병석 목사(경북), 박성규 목사(부산)을 선임한다.

## 6.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상황보고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관리 및 운영권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총신 사태가 완료될 때까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 1) 본 교단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장 제13조 1항 제13조(기관운영)
  1.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은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1 당회 이상 노회 1명).

## 2)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신대학교의 관리,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제6조 2. 재단이사회의 선임 및 보선은 본회에서 하며, 이사를 공천하여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되 피공천자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의무이행서약(구두 또는 서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 공천은 총회장과 운영이사회임원회에서 복수로 하며, 재단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재단 이사장은 4년 단임이다. 단, 재단이사장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이사회 임무) 본 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의 권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교 정관과 본 이사회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의 모든 명령과 총회결의에 의한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한다. 단, 총회의 지시 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장 선임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대표 1인, 총 3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3인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2인을 선출한 후, 2인 중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위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법에 따라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한 현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는 지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의 결의(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2017년 12월 16일 부로 총신대 총장의 임기가 끝났다.

현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이사(법인이사)도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불법이사들이다. 따라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총신대학교의 사유화와 탈교단화를 막기 위해 그동안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총장과 재단(법인)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해 주셔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가 적법한 종교사학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1.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위반한 총장 해임되어야 한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약속한 대로(자필서명, 공증) 전임자(길자연 목사)의 잔여 임기에 맞추어서 2017년 12월 16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소집된 재단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상술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대로 제7대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재단이사들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김영우 목사를 총장(임기 : 2017년 12월 15일~2021년 12월 14일)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법절차를 무시한 결정이기에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 2.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감사 해임되어야 한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71회 총회 결의(1986. 9. 23.~26./승동교회당-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에 의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 결정대로 시행해야만 한다.

#### “제71회 총회 정치부 보고 18번”

수원노회장 한승설씨가 제출한 총신대 이사회 운영에 관한 헌의의 건은 아래와 같이 원안 대로 받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 아래 원안 —



- ① 재단이사회는 전체이사회 결의만을 법적으로 이행한다.
- ② 재단이사회의 이사 결원은 전체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③ 문교부등록 재단이사회는 전체운영 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상술한 제71회 총회 결의 이후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2장 제6조 2항에 의거 재단이사회의 선임 및 보선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에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이사(법인이사) 및 감사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사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

### 3.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의 부역자들에 대한 해임되어야 한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 중에서 김영우 총장이 총신대학교의 사유화와 탈교단화에 적극 협력하여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법인, 인사, 회계, 입시 분야 등 한마디로 총신은 총체적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다. 총신대학교의 문제는 그동안 온갖 모함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총회와 총신측의 정치 파워게임도, 반사이익을 노리는 불순한 동기도 아니었다. 합법과 불법,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싸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의 지시대로 총체적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교수와 직원들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4.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 원상회복 요청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을 2017년 9월 15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직무대행 김승동 목사)는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으로 개정했다. 전문 1조에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하여 총회가 신학적 문제 외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므로 임원(이사)의 임기를 삭제하여 재단이사회가 선임만 하면 영구적으로 임원(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은 “본 총회에서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개정하므로 타 교단 인사들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재단이사회가 개혁신학에 투철한 인사라고 판단만 하면 본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가 아니더라도 임원(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교단 직명 종교사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라고 개정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교단 직명 종교사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상술한 것과 같이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은 하자가 명백하기에 정관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기에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의결서를 대한민국 교육부에 제출하여 2018년 8월 23일자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다.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는 “박재선(이사장), 박효근, 김남웅, 김승동, 김영옥, 문찬수, 박노섭, 송춘현, 유태영, 이균승, 이상협, 임홍수, 정중현, 하귀호, 홍성현, 주진만(감사), 김영우(전이사장), 안명환(전 이사장 직무대행)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로 처분한 문제들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공익적 목적,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이 이사들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앞선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는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들을 전원(15인과 감사, 전이사장, 전이사장 대행) 취임승인 취소한 것이다.



# 제102회 총회정기감사 수검표

- ◎ 대상기간 : 2018. 8. 6. ~ 2018. 8. 9.  
 ◎ 일 시 : 2018. 8. 20(화)  
 ◎ 장 소 : 총회회관

감 사 필		
일시	년	월 일
감사		
감사	2018	8월 20일
서기	최병준	이정
부장	라상기	이재

##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0617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 603호

06988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TEL : 02) 559-8466, 3479-0551 Fax : 02)568-7456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항목 회기	노회수	총 이사회비	납부된 이사회비	미납된 이사회비
100회기	136개	601,000,000	149,700,000 (65개 완납, 16개노회 분납)	289,500,000 (55개 미납, 16개 노회 분납)
101회기	136개	601,000,000	301,500,000 (74개 완납, 14개노회 분납)	299,500,000 (48개 미납, 14개 노회 분납)
102회기	146개	569,000,000	335,750,000 (49개 완납, 24개노회 분납)	233,250,000 (73개 미납, 24개노회 분납)
총계		1,771,000,000	786,950,000	822,250,000

\* 2016년 5월 17일 통장개설

102회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회계현황

2018.7.31 현재

수입내역	수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전기이월	316,505,045	행사비(장학금포함)	488,218,170
이사회비(전회기)	40,500,000	광고비	23,480,000
이사회비	192,500,000	사무비	18,432,850
이자수입	113,863	회의비(전체이사, 정기총회, 임원회, 특별위원회)	90,763,400
잡수입(특별과정)	116,000,010		
		현금	2,072,260
		잔액	42,652,238
합 계	665,618,918	합 계	665,618,918

**잔액·잔고증명서(예금·신탁·집합투자증권)**

[Certificate of Deposit/Trust/Investment Trust Balance]

증서번호 (Certificate No) : 5742336

· 예금주 (Depositor) · 위탁자 (Trustee) : 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주) (Registration No) : 120-82-\*\*\*\*

· 발급번호 (Issue No) : 0769000349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KB기업종합통장	계좌번호 (Account Number)	076937-04-011139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Profit)	
예금·신탁잔액 (Amount)	₩42,652,238	미결제타점권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	
평가금액 (B/A)		환율 (Exchange Rate)	
잔고좌수 (Unit)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 (Withdrawal Restrictions)	예금인출 제한내용, 질권설정내용 등이 없음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Interest)	
예금·신탁잔액 (Amount)		미결제타점권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	
평가금액 (B/A)		환율 (Exchange Rate)	
잔고좌수 (Unit)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 (Withdrawal Restrictions)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Interest)	
예금·신탁잔액 (Amount)		미결제타점권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	
평가금액 (B/A)		환율 (Exchange Rate)	
잔고좌수 (Unit)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 (Withdrawal Restrictions)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Interest)	
예금·신탁잔액 (Amount)		미결제타점권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	
평가금액 (B/A)		환율 (Exchange Rate)	
잔고좌수 (Unit)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 (Withdrawal Restrictions)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Interest)	
예금·신탁잔액 (Amount)		미결제타점권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	
평가금액 (B/A)		환율 (Exchange Rate)	
잔고좌수 (Unit)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 (Withdrawal Restrictions)			

합계 (Total Amount)	₩42,652,238	환율 (Exchange Rate)	
미결제타점권 (Uncleared Checks & Bills)	0 Included	환산금액 (Equivalent Amount)	

Say : 금사천이백육십오만이천이백삼십팔원정

· 귀하의 예금·신탁 잔액,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18년 07월 31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In reply to your request, we certify that Deposit(s)·Trust(s)·Investment Trust(s) we hold in your name show(s) / showed the above amount(s) as of the close of business on \_\_\_\_\_.

· 미결제타점권(당좌수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은 교환결제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You are not able to withdraw uncollected checks before settlement for exchange is made.  
· 평가금액은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을 말하며, 기준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A(Balance Amount)" refers investment trust balance and can be changed by daily Net Asset Value.

발급일 (Date of Issue) : 2018년 08월 02일  
 KB국민은행 (Kookmin Bank) 대치북 지점(인) (Branch)  
 책임자 (Yours truly) 남소영 (Authorized signature)  
 취급자 남소영  
 전화번호 (Telephone No.) : ☎ 02-563-7804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내용 일치여부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빠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300-020(210×297) 모조지 80g/m<sup>2</sup> (10.02 개정) K11 증명서 조희는 발급일자 포함 10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청원

성총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안정적인 총회목회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이 맡는다.
2. 총회목회대학원 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여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3. 총회목회대학원 이사는 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 총신대학교 총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지역 김한성 목사, 서북지역 최윤길 목사, 호남 지역 김종주 목사, 중부 지역 윤익세 목사, 영남-박병석 목사(경북), 박성규 목사(부산)을 선임한다.

2018년 9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위원장 김 희 태

서 기 김 정 호

별첨. 정관 및 운영이사회 규칙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 “총회”라 한다)의 직할하에 성경과 개혁신학 및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2.1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3. 01. 30.)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총신대학교
2.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 (개정 2014. 06. 05.)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2.18.)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



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03. 08.)(개정 2012. 06. 04.)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2.18.)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원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삭제>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



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 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1조의 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운영규정) 평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11. 08.)

1. 조 립 업
2. <삭제>
3. 임 대 업
4. <삭제>
5. 학원운영업
6. 원격평생교육시설



7. <삭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전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11. 08.)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 (개정 2014. 06. 05.)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1관 임명

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02.18.)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은 1차에 한하여 2년으로 한다. 단, 교수는 3년으로 한다.

1. 교수 정년까지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제> (개정 2013. 05. 10.)
5. <삭제>
6. 겸임교수 1년
7. <삭제>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3. 05. 10.)

④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실제 임면을 위한 인사발령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 교원은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3. 02. 27.)

제39조의 2(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중점 직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3. 05. 10.)

1. 일반전임교원 : 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 05. 10.)

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실습지도, 사회봉사지도 또는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 05. 10.)

3. 교육중점교원 : 강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강의와 연구를 중점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 05. 10.)

4. 연구중점교원 : 학과의 전공 중심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연구업적생산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3. 05. 10.)

②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 05. 10.)

제40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 2(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임용권자의 요청이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안식년에 해당하여 연구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는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명예퇴직수당)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두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비전임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5. 10.)

2. 정년보장교원임용 또는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5. 10.)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특별채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05. 10.)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강의평가 및 취업지도실적 (신설 2013. 05. 10.)

제52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부총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05. 10.)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05. 1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05. 10.)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05. 10.)

② 서기는 교원인사위원 중에서, 간사를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05. 10.)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복무 (개정 2013. 05. 10.)**

제57조의 2(교원의 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원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05. 10.)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체적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위인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재심위원회

제70조 내지 제83조 <삭제>

### 제4절 사무직원

제8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06. 05.)

1.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06. 05.)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의 2(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05. 10.) (개정 2013. 11. 08.)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처장과 팀장 중에서 9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 05. 10.) (개정 2013. 11. 08.) (개정 2014. 06. 05.)

③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하며, 서기는 인사부서의 팀장이 한다. (신설 2013. 05. 10.) (개정 2013. 11. 08.) (개정 2014. 06. 05.)

④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신설 2013. 05. 10.)

⑤ 기타 직원인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05. 10.)

제86조(신분보장 및 복무) 일반직원의 신분보장과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8급은 58세, 9급은 55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58세로 한다. (개정 2013. 11. 08.) (개정 2014. 06. 05.)

제89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제7장 직 제

### 제1절 법 인

제90조(법인사무조직)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법인과를 두며 과장(또는 차장)은 부참사(또는 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대학교

제9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 대학 담당 부총장 및 대학원 담당 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이, 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대학원장이 겸임한다.(개정 2013.02.27.)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대행한다.

제92조(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14. 06. 05.)

-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3조 <삭제>

제94조(하부조직) 대학교의 하부조직은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05. 10.)(개정 2014. 06. 05.)

제94조의 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 1. 30.)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처에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02. 27.)

제95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부설기관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3. 05. 10) (개정 2013. 11. 08.)

1. 평생교육원 (개정 2013. 05. 10.)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개정 2013. 05. 10.)
3. 한국어 어학당 (개정 2013. 05. 10.)
4. 외국어 어학당 (개정 2013. 05. 10.)
5. 대안학교 (개정 2013. 05. 10.)
6. 기독교대안교육지원센터 (개정 2013. 05. 10.)
7. 총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개정 2013. 05. 10.)
8. 다문화연구소 (개정 2013. 11. 08.)
9.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정 2013. 05. 10.)
10. 기독교복지지원센터 (개정 2013. 05. 10.)
11. 중독재활상담연구소 (신설 2013. 11. 08.)
12. 아시아개혁주의선교센터 (신설 2013. 12. 06.)



13. 개혁신학연구센터 (신설 2013. 12. 06.)

14. 전임교직원훈련원 (신설 2013. 12. 06.)

②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6조의 2(위탁시설)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0.) (개정 2013. 11. 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05. 10.)

### 제3절 유치원

제97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절 정 원

제98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 제8장 보 칙

제99조(공고) 이 법인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기독교신문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 소
이사겸이사장	백남조	67.5.2~71.5.1	1913.11. 1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390의1
이 사	김인득	"	1915. 8.17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의1
"	곽창후	"	1923. 3.29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66
"	김윤찬	"	1905. 8.23	서울시 중구 동자동 22의23
"	김창인	"	1917.10.24	서울시 중구 묵정동 31의1
"	정규오	"	1914.11.11	전남 광주시 금남로 4가 79
"	양화석	"	1901.12.21	충남 대전시 선화동 12의 3
"	고성훈	67.5.2~69.5.1	1917. 8.11	서울시 중구 예관동 6
"	양재열	"	1922.12.18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64의 6
"	김철호	"	1910. 4.1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02의90
"	노진현	"	1904. 8.28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5
이 사	이환수	"	1909. 2. 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97의 21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 소
"	정순국	"	1915. 3. 8	경남 진주시 본성동 116
감 사	정봉조	"	1912.10. 5	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동 32
"	이성현	67.5.2~68.5.1	1924. 6.20	대구시 중구 대신동 180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6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6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7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당해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



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종전 정관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일반직원은 이 정관의 정년을 적용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및 예·결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명
일반직원	4명	
2급(참 여)		1명
4급(참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1명

## [별표 2]

##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1명
일반직계	55명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5급	6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7명
기술직계	1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10급	2명
별정직계	9명

(개정 2011. 12. 9.) (개정 2014. 06. 05.)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명
일반직원 4명	
2급(참 여)	1명
4급(참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1명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1명
일반직계 55명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5급	6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7명
기술직계 1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10급	2명
별정직계	9명

(개정 2011. 12. 9.) (개정 2014. 06. 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신대학교의 관리,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제3조(위치) 본 이사회의 사무소는 총신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장 조 직

제4조(이사회 구성) 본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21당회 이상)으로 하며, 총회장, 총장, 신대원,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이사의 임기) 운영이사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장은 2년 단임으로 한다.

제6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파송이사는 노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보선은 본회에서 하며, 이사를 공천하여 투표에 의하여 선임 하되 피공천자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의무이행서약(구두 또는 서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 공천은 총회임원회와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복수로 하며,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 소속된 총대 목사 및 장로 중에한다. (단 목사는 운영이사 가운데서 한다) 재단 이사장은 4년 단임이다. 단, 재단(법인)이사장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2018.8.14. 개정).

①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는, 개방이사 4인 및 일반이사 8인은 4년, 당연직 이사(운영이사장, 서기, 회계)는 2년, 감사 3인(개방감사 1인<제3장제21조 ⑤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제3장제21조 ⑦항>) 모든 임원은 임기 중 총회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된다(2018.8.14. 개정).

②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2018.8.14. 개정).

제7조(임원) ① 본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재단이사장 1인, 파송이사 중 1인), 서기 1인(파송이사), 부서기 1인(재단이사), 회계 1인(파송이사), 부회계 1인(재단이사)의 임원을 둔다(2018.8.14. 개정).

② 임원의 선임은 정기이사회(9월 총회 직전)에서 하되, 이사장은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하고, 다른 임원은 투표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직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임원회에 참석한다.

제8조 1.(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회를 운영·관리한다.
- ② 부이사장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 ③ 서 기 : 서기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전과 장소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기록하며, 제반 문서를 수발한다.
- ④ 부서기 : 서기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 ⑤ 회 계 : 회계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정의 수입, 지출을 정리한다.
- ⑥ 부회계 : 회계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2.(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2013.8.22.신설)



- ① 이사장은 60세 이상 된 자로 하되, 운영이사 임원을 역임 했거나 운영이사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2018.8.14. 개정).
- ② 운영이사 임원(부이사장, 서기, 회계)은 이사 3년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 ③ 운영이사 임원은 이사회비률(노회미납회비포함) 완납 한 자로 한다(2018.8.14. 개정).

### 제3장 의무 및 권리

제9조(이사회 임무) 본 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의 권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교 정관과 본 이사회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의 모든 명령과 총회결의에 의한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한다. 단, 총회의 지시 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장선임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하 “본회”라 함)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3배수 추천한다. 본회 전체 이사회에서 투표로 1인을 선출한 후(다득표자),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재단(법인)이사회에 당선자의 총장 임명을 요청한다. 총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4년으로 단임으로 하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2018.8.14. 개정).

①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운영이사회 정임원 3인(이사장, 서기, 회계), 재단이사회 2인(이사장, 서기), 교수 대표 2인(총신대학교 1인, 신학대학원 1인), 총동창회 2인(총신대학교 1인, 신학대학원 1인), 학생대표 2인(총신대학교 1인, 신학대학원 1인)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임원은 당연직으로(운영이사장, 서기, 회계) 한다(2018.8.14. 신설).

② 총장입후보 자격은 본 교단의 소속된 목사로서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 현직 전임교수(10년 이상 역임한 자)로 사립학교법 및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2018.8.14. 신설).

③ 제출 서류는 ㉠ 총장입후보지원서 1부 ㉡ 이력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각 1부 ㉣ 대학경영계획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병적증명서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노회안수증명서 ㉮ 노회소속증명서 ㉯ 명함판 사진 2장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서기에게 접수한다(2018.8.14.신설).

④ 총장후보는 총장 임기 만료일 60일전에 교단지와 총회 및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2018.8.14. 신설).

⑤ 총장 및 재단이사(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2018.8.14. 신설).

3. 이사의 년회비는 정기이사회에서 익년회비를 매년 결정한다. 단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노회의 이사는 회원권을 정지한다.

4. 학교의 예,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

제10조(서약서) 본회는 본교의 총장 및 교수와 전임강사에게서 임용시 다음과 같이 작성한 서약서에 승낙 서명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과 본 대학 이사회 앞에서 신, 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본 대학교 ○○(으)로 있는 동안에 직, 간접으로 본교 조직과 규칙에 위반되는 다른 것을 결코 가르치지 아니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제11조(정직과 파면) 본회가 이 서약에 위반되는 총장 및 교수가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장 회 의

제12조(정기회) 본 이사회의 정기회는 매년 1차로 하되, 총회 전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되, 통지한 안건 이외의 것은 토의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에 등기로 발송하여야 한다(2018.8.14. 개정).

제13조(회의성수 및 결의) 회의의 성수는 재적원 과반수로 하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5장 재 정

제14조(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와 전국교회와 교역자의 헌금으로 한다. 단,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의 보고를 받는다.

제15조(총장의 보고) 총장은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결산 및 예산서와 학교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상 별

제16조(표창)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사는 운영이사회 의결로 그 공로를 표창한다.

제17조(징계)

1. 본회의 회원 중 품위를 상실한자, 본교 발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이단을 주장하거나 동조한 자, 근거 없는 낭설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는 본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 정직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재단이사나 운영이사는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로 하여금 제명케 하고, 불응시에는 총회재판국에서 치리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시까지 이사회의 모든 공직은 유보한다. 불응하는 당회, 노회는 절차에 따라 제재한다.

## 제7장 부 칙

제18조(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재적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하되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8.14. 개정).

제19조(시행일) 본 규칙은 본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단, 총회결의에 의한 위임사항일 경우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 날로 효력을 가진다(2018.8.14. 개정).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총장 및 재단(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본 이사회의 재적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2018.8.14. 신설).

## 부 록

- ① 1967. 9. 20 서울 평안교회당에서 개최된 제52회 총회의 승인을 받다.
- ② 1981. 2. 18 총신대학에서 회집된 정기이사회에서 부이사장 1인을 2인으로 규칙을 수정하다.
- ③ 1984. 9. 17 대구 서현교회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부서기 1인, 부회계 1인을 삼입토록 규칙



을 수정하다.

④ 1987. 2. 11 총신대학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본 규칙을 수정하다.

⑤ 1989. 9. 18 총회회관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규칙을 수정하다.

⑥ 1993. 9. 20 광주 동명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상, 별 조항을 삽입하는 규칙을 수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다.

⑦ 1994. 9. 27 대구 동부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학장선임 및 이사회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수정을 하고 제79회 총회의 승인을 받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한명수, 서기/김윤배, 위원/서기행, 김수학, 정문호, 이성현, 문갑천)

⑧ 1996. 9. 18 청주 중앙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총신대학의 교명이 총신대학교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총장선임 및 이사회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한명수, 서기/김윤배, 위원/서기행, 정문호, 김상중)

⑨ 1997. 9. 23 서울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제82회 총회에 96. 9. 18일에 수정된 규칙을 보고하다.

⑩ 1999. 9. 27 정읍성광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이사와 총장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제84회 총회에 보고하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서기행, 서기/김수학, 위원/김윤배, 김동권, 김상중, 한명수, 박원규)

⑪ 2008. 9. 19 총신대학교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제 93회 총회에 보고하다.

⑫ 2013. 8. 22 총신대학교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임과 임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을 규칙 수정하고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다.

⑬ 2016. 2. 18.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본 규칙을 개정하다.

⑭ 2016. 9. 29.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다.

⑮ 2018. 8. 14. 총신대학교에서 회집된 정기 총회에서 총장선임 및 재단이사(법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 규칙부 승인후 총회에 승인하도록 하다.

(규칙개정위원회 : 위원장/강진상, 부위원장/송귀옥, 서기/김정호, 회계/이기택, 위원/성남용, 위원/임종구, 위원/김성기)